제941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관의 의무(신설) ○ 실증·생산 관련 시설을 개방하는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관은 관련 시설의 ①종류와 위치, ②개방시간, ③활용조건·방법, ④비용 등을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 ○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관*이 관련 자료**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 *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·생산 관련 시설 보유기관, 미래자동차 부품 및 부품 수요기업 등 ** ①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, ②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장비·시설의 이용 정보, ③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정보, ④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술동향, 표준, 특허 등에 관한 정보, ⑤미래자동차 부품기업과 상호협력을 희망하는 기관, 기업 등의 정보, ⑥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, ⑦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,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▶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,제21조	1.비중요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2</td><td>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
(산업통상자원부)</td><td>1.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관의 의무(신설)
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관이 관련 자료*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
* ①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공급망 현황, ②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연구장비·시설의 이용 정보, ③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에 관한 정보, ④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술동향, 표준, 특허 등에 관한 정보, ⑤미래자동차 부품기업과 상호협력을 희망하는 기관, 기업 등의 정보, ⑥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결과, ⑦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,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
▶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tr><td>3</td><td>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
(농촌진흥청)</td><td>1.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기준 등(신설)
ㅇ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기준 마련
–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기준을 시설 · 장비 기준, 인력 기준, 운영 기준(3요소)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정함
<table>
<tr><th>기준</th><th>주요내용</th></tr>
<tr><td>시설·장비 기준</td><td>✓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외 공간과 실내 공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, 이 경우 실외 공간은 농축산물 생산 공간과 분리할 것
✓ 세면대·음수대 및 남녀 구분된 화장실, 소화기 등을 갖출 것</td></tr>
</table>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
<table>
<tr><th>기준</th><th>주요내용</th></tr>
<tr><td>인력
기준</td><td>✓ 대표자1명과 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갖출 것
✓ 대표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요건 명시
✓ 대표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은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 및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최근 1년 이내에 이수했을 것</td></tr>
<tr><td>운영
기준</td><td>✓ 운영방침·중장기 목표 등을 포함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
✓ 수입-지출 내역을 작성·관리할 것
✓ 사고발생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등</td></tr>
</table>
▶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
</td><td></td></tr>
<tr><td>4</td><td>주택법 시행령 개정안
(국토교통부)</td><td>1.행정처분기준 신설(신설)
ㅇ 주택사업등록자가 타인의 등록증을 차용, 도용 및 그 행위를 교사, 방조한 경우도 등록말소하도록 추가

▶주택법 시행령 제18조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5</td><td>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
(농림축산식품부)</td><td>1.전자마권의 등록 및 등록 취소(신설)
ㅇ 전자마권 구매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 규정
<table><tr><th>항목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<tr><td>등록 장소</td><td>경마장(3개소), 장외발매소(26개소), 마사회가 수립하는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에서 지정하는 장소</td></tr><tr><td>등록 방법</td><td>본인이 방문하여 신청</td></tr><tr><td>등록 사항</td><td>1. 신청자의 실명·연령 확인 및 본인 명의 등록
2. 전자적 형태의 마권(이하 "전자마권"이라 한다) 구매에 사용할 신청자 명의의 정보통신기기 등록
3. 전자마권 구매 및 환급에 사용할 신청자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 개설 또는 등록</td></tr></table>ㅇ 전자마권 구매자 등록취소 사유 규정
<table><tr><th>항목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<tr><td>등록 취소 사유</td><td>1. 법 제6조의4제2항 각 호*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* 21세 미만인 사람,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, 마사회의 임직원, 조교사·기수·말관리사,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,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2.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
3. 본인 명의를 타인의 등록을 위하여 빌려준 경우
4. 그 밖에 건전한 경마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마사회가 인정하는 경우</td></tr></table>▶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2,제3조의3</td><td>1.비중요
2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2.전자마권 발매 운영 실적 점검 · 평가(신설)
ㅇ 전자마권의 발매 운영 실적 점검 · 평가 세부규정 신설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
<tr><td>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</td><td>1.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전자마권 발매 운영 계획* 이행에 관한 사항
2.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 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
3. 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
4. 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이용 차단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</td></tr>
<tr><td>평가주기</td><td>매년</td></tr>
<tr><td>이행실적 보고서 제출</td><td>7월 말, 1월 말</td></tr>
<tr><td>점검·평가결과 이행</td><td>농식품부장관의 점검결과 통보사항에 대해 마사회에서 조치</td></tr>
</table>
▶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의4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경찰청)	1.확성기 등의 소음기준(강화) ○ (소음기준) 소음기준을 5데시벨씩 강화하되, 체감 피해가 큰 지역(주거지역 · 학교 · 종합병원)은 야간·심야 시간에 한해 10데시벨 강화 ○ (배경소음) 배경소음이 소음기준보다 큰 경우에는, ▲ 측정된 배경소음도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등가소음도 기준으로, ▲ 등가소음도 기준에서 20데시벨을 더한 값을 최고소음도 기준으로 적용* * ▲ **등가소음도**는 **10분간 측정**하여 기준 초과시 소음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(단, 주거지역·학교·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의 경우 5분간 측정) ▲ **최고소음도**는 매 등가소음도 측정시 발생한 소음도 중 **가장 높은 소음도**를 기준으로,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 초과시 소음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(단, 주거지역·학교·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의 경우 1시간 내 2회 기준 초과시 위반으로 판단) ▶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소방청)	1.건축허가 등의 동의(강화) ㅇ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서장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 범위에 △공동주택 △숙박시설 △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 추가 ▶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.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(강화) ㅇ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치과의원 및 한방의원 추가 ▶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3.특정소방대상물(강화) ㅇ 「소방시설법」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△데이터센터 △무정전전원공급장치(UPS) △방음터널을 추가 ▶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4.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·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(강화) ㅇ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화 ▶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